|  |  |  |
| --- | --- | --- |
| **<선적항 퇴(면)세 관리방법> 발표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공고 2012년 제44호  <재정부, 해관총서, 국가세무총국의 상해 선적항 퇴세 정책 시범시행에 관한 통지>(재세[2012]14호)에 근거하고, 현행 수출하는 화물과 노무 증치세 및 소비세 관리방법과 기타 유관규정을 고려하여 <선적항 퇴(면)세 관리방법>을 제정하고 발표한다.  이에 특별히 공고한다.  국가세무총국  2012년 8월 24일  **제1장 퇴(면)세 비안**  **제1조** 수출기업에 선적항(역주: Port of Departure) 퇴(면)세 정책의 적용은 아래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1) 이미 수출 퇴(면)세의 자격인정이 처리된 자가수출화물 증치세 일반납세인  (2) 세관이 B류 이상 관리를 시행하는 수출기업(세관이 제공한 “선적항 표식”이 있는 수출화물 세관신고서 전자정보를 기준으로 함)  (3) 세무기관의 수출 퇴세심사 주요정보(关注信息) 중 관심기업 등급 1급에서 3급 사이에 열거되지 않은 수출기업  **제2조** 수출기업의 선적항 퇴(면)세 비안은 수출 퇴세심사 시스템이 자동으로 확인한 비안방식을 차용한다. 세무기관이 세관이 제공한 “선적항 표식”이 있는 수출화물 세관신고서 전자정보를 읽어올 때, 수출퇴세 심사 시스템은 자동으로 유관 수출기업의 “기업대마(코드) 데이터에 “선적항 퇴세” 표식을 심는다.  **제2장 퇴(면)세 신고**  **제3조** 수출기업은 선적지 해관이 발급한 수출화물 세관신고서(수출퇴세 전용)(이하 “퇴세증명서”)에 근거하고 현행 수출하는 화물과 노무의 퇴(면)세 규정에 따라 세무기관에 수출 퇴(면)세 신고처리를 신고한다.  **제4조** 수출기업은 선적항 퇴(면)세 신고 시, 신고 보고표 중 명세표의 “퇴(면)세 업무유형”란에 “QY”표식을 기입한다. 대외무역 기업은 단독 관련번호를 사용하여 선적항 퇴세정책에 적용되는 수출화물 퇴세를 신고해야 한다.  **제5조** 선적항 퇴(면)세 정책을 적용하는 수출화물의 퇴세율 집행시기는 선적지 세관이 발급한 퇴세증명서 상에 명시된 “수출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제6조** 수출기업의 수출 퇴(면)세 기타신고 요구는 현행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3장 퇴(면)세 심사**  **제7조** 각 지역 세무기관은 현행 전자전송 시스템 수출퇴세 서브시스템의 관리규정에 따라, 세무총국이 하달하고 세관이 주석을 단 “선적항 표식”이 있는 세관신고서 데이터를 즉시 다운로드하고 열독해야 한다.  (1) 선적지 세관이 발급한 퇴세증명서의 세관신고서 데이터 (이하 “선적 데이터”)  (2) 정상적으로 세관수속이 완료되고 핵소(核销)처리된 세관신고서 데이터 (이하 “정상 세관수속 완료데이터”)  (3) 실제로 수출항에 도착하지 못한 화물의 세관신고서 데이터 (이하 “미도달 데이터”)  (4) 화물이 수출항에 도착하지 않고 다시 수출하지 않을 때, 세관이 이미 발급한 퇴세증명서를 회수한 세관신고서 데이터 (이하 “세관신고 철회 데이터”)  **제8조** 각 지역 세무기관은 선적항 퇴세정책을 적용한 수출화물에 대해 “선적 데이터”를 사용하여 퇴(면)세를 처리를 심사해야 한다.  **제9조** 수출퇴세 심사 주요정보(关注信息)의 주요기업 등급은 1급부터 3급까지의 수출기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각 지역 세무기관은 반드시 정상 세관수속 완료데이터를 사용하여 퇴(면)세 처리를 심사해야 하며, 선적 데이터를 사용하여 퇴(면)세 처리를 심사할 수 없다.  **제10조** 각 지역 세무기관은 선적항 퇴(면)세 대조업무를 강화하고 수출 퇴세 심사시스템 중, 세관이 제공한 “선적항 표식” 주석이 있는 세관신고서 데이터에 근거하여 즉시 대조데이터를 생성해야 한다. 자동으로 비교 대조하여 이상이 있는 데이터는 아래의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1) 선적 데이터 중, 수출수량 및 단위, 총 가격 등 항목과 정상 세관수속 완료 데이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정상 세관수속 완료데이터를 기준으로 하여 기존 퇴(면)세액을 조정한다.  (2) 대조 데이터 중, 세관신고서 철회 데이터와 미도달 데이터가 관련된 경우, 현행 규정에 근거하여 기존 (면)퇴세액을 추징하거나 조정처리를 진행한다.  (3) 대조 데이터 중, 선적일로부터 2개월 내에 세관수속 완료 핵소(核销)처리가 되지 않고 정상 세관수속 완료 데이터의 세관신고서 데이터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이하 “기한경과 세관수속 미완료 데이터”), 현행 규정에 근거하여 기존 퇴(면)세액을 추징하거나 조정처리를 진행하고, 선적항 퇴세정책을 다시 향유할 수 없다.  상술 규정에 따라 처리를 완료한 기한경과 세관수속 미완료 데이터에 대해, 세관 다시 세관수속 핵소를 처리하고 정상 세관수속 완료 데이터를 수령한 경우, 수출기업은 선적지 세관이 발급한 퇴세증명서에 근거하여 퇴세신고를 다시 진행할 수 있다. 수출퇴세를 주관하는 세무기관은 정상 세관수속 데이터에 근거하고 현행규정에 따라 심사처리 한다.  **제11조** 각 지역 세무기관은 대조결과를 수출기업에게 적시에 피드백 해야 하며, 수출기업이 피드백 정보에 의거하여 기존 (면)퇴세액을 보충납부 하거나 익월의 증치세 납세 신고기간에 신고데이터를 조정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수출기업이 기한 내에 기존 (면)퇴세액을 보충납부 하지 않거나 신고데이터를 조정하지 않는 경우, 각 지역 세무기관은 즉시 추징해야 한다.  **제4장 기 타**  **제12조** 화물이 수출항에 도착하지 않고 실제로 다시 수출하지 않는 경우, 수출기업은 현행규정에 따라 세무기관에 <수출화물 퇴세 보충납세(미퇴세)증명>의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수출기업이 퇴(면)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퇴(면)세를 다시 신청할 수 없다. 이미 퇴(면)세를 신고처리한 경우, 기존의 퇴(면)세액을 보충납부해야 한다. 세무기관이 심사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세관이 제공한 미도달 데이터와 세관신고 철회 데이터를 비교 대조해야 한다.  **제13조** 증치세 면세정책을 시행하는 수출화물은 주관세무기관이 정상 세관수속 완료 데이터에 따라 면세를 심사해야 한다.  **제14조** 각급 세무기관은 정확하고 적시에 선적항 퇴세를 처리해야 하며, 선적항 퇴세 유관업무의 일상 대조와 예비경보평가 업무를 강화해야 한다.  **제15조** 본 방법은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关于发布《启运港退（免）税**  **管理办法》的公告**  国家税务总局公告2012年第44号  　　根据《财政部 海关总署 国家税务总局关于在上海试行启运港退税政策的通知》（财税[2012]14号），结合现行出口货物劳务增值税和消费税管理办法以及其他有关规定，特制定《启运港退（免）税管理办法》。现予发布。  　 特此公告。  　　国家税务总局  　　二○一二年八月二十四日    **第一章 退（免）税备案**  **第一条** 出口企业适用启运港退（免）税政策须要满足以下条件：  （一）已办理出口退（免）税资格认定自营出口货物的增值税一般纳税人；  （二）海关实行B类及以上管理的出口企业（以海关提供的带“启运港标识”的出口货物报关单电子信息为准）；  （三）税务机关在出口退税审核关注信息中关注企业级别未列为一至三级的出口企业。  **第二条** 出口企业启运港退（免）税备案采取由出口退税审核系统自动确认的备案方式。税务机关在读入海关提供的带“启运港标识”的出口货物报关单电子信息时，出口退税审核系统自动在相关出口企业的“企业代码”库中置上“启运港退税”标志。  **第二章 退（免）税申报**  **第三条** 出口企业凭启运地海关签发的出口货物报关单（出口退税专用）（以下称退税证明联）按现行出口货物劳务退（免）税规定向税务机关申报办理出口退（免）税。  **第四条** 出口企业申报启运港退（免）税时，应在申报报表中的明细表  “退（免）税业务类型”栏内填写“QY”标识。外贸企业应使用单独关联号申报适用启运港退税政策的出口货物退税。  **第五条** 适用启运港退（免）税政策的出口货物其退税率执行时间以启运地海关签发的退税证明联上注明的“出口日期”为准。  **第六条** 出口企业其他申报出口退（免）税要求按现行规定执行。  **第三章 退（免）税审核**  **第七条** 各地税务机关应按照现行电子传输系统出口退税子系统的管理规定，及时下载并读入税务总局下发的海关加注“启运港标识”的报关单数据：  （一）启运地海关签发退税证明联的报关单数据（以下称启运数据）。  （二）正常办理结关核销的报关单数据（以下称正常结关数据）。  （三）未实际到达离境港货物的报关单数据（以下称未到达数据）。  （四）货物未运抵离境港不再出口，海关收回已签发的退税证明联的报关单数据（以下称撤销报关单数据）。  **第八条** 各地税务机关对适用启运港退税政策的出口货物，应使用“启运数据”审核办理退（免）税。  **第九条** 出口退税审核关注信息中关注企业级别列为一至三级的出口企业，各地税务机关必须使用正常结关数据审核办理退（免）税，不得使用启运数据审核办理退（免）税。  **第十条** 各地税务机关应加强启运港退（免）税的复核工作，及时在出口退税审核系统中根据海关提供的加注“启运港标识”的报关单数据，生成复核数据。对自动复核比对异常的数据应按如下原则进行人工处理：  （一）对启运数据中的出口数量及单位、总价等项目与正常结关数据不一致的，以正常结关数据为准调整已退（免）税额。  （二）对复核数据中涉及撤销报关单数据和未到达数据的，根据现行规定追缴已（免）退税款或进行调整处理。  （三）对复核数据中涉及自启运日起2个月内未办理结关核销手续、未收到正常结关数据的报关单数据（以下称逾期未结关数据），根据现行规定追缴已退（免）税款或进行调整处理,不再享受启运港退税政策。  　 对按上述规定已处理完毕的逾期未结关数据，海关又结关核销、收到正常结关数据的，出口企业可凭启运地海关签发的退税证明联重新申报退税，主管出口退税的税务机关依据正常结关数据按现行规定予以审核办理。  **第十一条** 各地税务机关应及时将复核结果反馈出口企业，并督促出口企业依照反馈信息补缴已（免）退税款或在次月增值税纳税申报期调整申报数据。出口企业未按时补缴已退（免）税款或调整申报数据的，各地税务机关应及时予以追缴。  **第四章 其 他**  **第十二条** 货物未运抵离境港不再实际出口的，出口企业应按照现行规定向税务机关申请出具《出口货物退运已补税（未退税）证明》，出口企业未申报退（免）税的，不得再申报退（免）税；已申报办理退（免）税的，应补缴已退（免）税款。税务机关在审核出具证明时，应审核比对海关提供的未到达数据和撤销报关单数据。  **第十三条** 实行增值税免税政策的出口货物，主管税务机关应按正常结关数据审核免税。  **第十四条** 各级税务机关应准确及时办理启运港退税，加强启运港退税有关业务的日常复核和预警评估工作。  **第十五条** 本办法自2012年8月1日起施行。 |